

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유자격 외국인

유자격외국인이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:

- 이민법(INA)에 따라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자격을 부여 받은 자.
- INA 의 제 208 항에 따른 망명 승인자.
- INA 의 제 207 항에 따른 미국 입국을 승인 받은 난민.
- 최소 1년 동안 INA 의 제 212(d)(5)항에 따른 미국으로의 가석방자.
- 1997년 4월 1일 이전에 발효된 INA 의 제 243(h)항에 따라 국외추방이 보류되거나 INA 의 제 241(b)(3)항에 따라 이동이 보류된 자.
- 1980년 4월 1일 이전에 발효된 INA 의 제 203(a)(7)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 승인자.
- 1980년 난민교육지원법 제 501(e)항에 규정된 쿠바 또는 아이티 출신 입국자.
-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매맞는 배우자 또는 자녀, 또는 해당 매맞는 사람의 부모 또는 자녀, 및 달리 8 USC 1641(c) 요건을 만족하는 자.
- 캐나다 출신 북미 인디언 원주민과 최소 50%의 미국 인디언 혈통 또는 미국 외에서 태어난 연방에서 인정하는 부족원.
- 아메라시안 이민자.
- 일부 호몽 또는 산악지대 라오스 부족원.
- 최소한의 전시 근무 요건(2년)을 충족한 참전용사 및 미국 참전용사의 배우자, 미혼 생존 배우자 및 미혼 부양자녀.
- 미 육군, 해군, 공군, 해군 또는 해안경비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는 현역 군인, 배우자 및 부양자녀
- 연방정부가 규정한 미국의 비시민 국민 신분.
- 난민센터(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)가 인증(성인)하거나 적격 통지서(아동)를 받은 심각한 상태의 인신매매 피해자
- 특수 이민 비자 소지자 -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국민.